

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3. 9. 15.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12호로 2023년 9월 6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기존 회기 시작 7일 전 의안 제출 규정을 회기 시작 10일 전 까지로 개정하여,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시간을 보장하고, 회기 시작 전 운영위원회에서 의안이 제대로 제출된 이후에 의안에 대해 명확하게 논의하고자 개정함.

또한,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지방의회의 권한인 서류제출 요구 권한을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에 규정하여 서류제출 요구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안의 제출·발의(안 제19조의2조)

나. 서류제출 요구(안 제3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9. 11. ~ 9. 15.):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기존 회기 시작 7일 전 의안 제출 규정을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로 개정하여,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시간을 보장하고, 회기 시작 전 운영위원회에서 의안이 제대로 제출된 이후에 의안에 대해 명확하게 논의하고, 「지방자치법」 상 규정된 지방의회의 권한인 서류제출 요구 권한을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에 규정하여 서류제출 요구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19조의2에서는 의안 제출 기한을 회기시작 7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개정하였으며,
- 안 제26조에서는 한시 기구인 미래비전추진단이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됨에 따라 행정위원회 소관에서 삭제하였고,
- 안 제39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의안 제출 기한을 개정하여 의안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지방의회 권한으로 규정된 서류제출 요구의 방법을 명확히 하여 안전이 가진 정보만으로 심의하기에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서류제출 요구를 통해 보완함으로써 안전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전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었다고 사료됨.

참고 자료

1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분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①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 전까지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